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73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송옥주·추미애·황명선

한민수・홍기원・박 정

박해철 · 한정애 · 이수진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 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 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 구가 늘어나고 있고,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 는 통합교육지원청의 업무 비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향후 신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 급증이 예정되는 지역의 경우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시급함에도 여전히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

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 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 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1개 또는 2개 이상의"를 "1개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령 으로"를 각각 "해당 시·도의 조례로"로 한다.

다만,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등) ①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1</u>
<u>1개 또는 2개 이상의</u> 시·군	개의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	
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	
육지원청을 둔다. <단서 신설>	다만,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
	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시ㆍ
	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②
명칭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u>해당 시·도의 조례로</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4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u>	<u>ন</u> ু
<u>통령령으로</u> 정한다.	<u>당 시·도의 조례로</u>